

1. 개정이유

재해 어선원의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인 선주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재해 어선원의 요양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여지가 있어 선주의 사전 확인없이도 재해 어선원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 신청을 재해 어선원 이외에 재해 어선원을 치료하고 있는 지정의료기관에서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어선원의 요양치료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하며, 그 밖에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併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신청시 제출서류에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은 요양신청서’를 ‘요양신청서’로 개정하여 선주 사전확인 제도 폐지(안 제5조제1항)”

- 1) 재해 어선원의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인 선주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사실상 재해 어선원의 산재여부에 대해 선주가 사전 승낙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되거나 권한 남용의 형태로 악용되어 재해 어선원의 요양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여지가 있음
- 2) 재해 어선원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에서 재해조사 과정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 재해 어선

원의 요양급여 신청 접근성을 제고하려고 함

나. 요양급여 신청을 재해 어선원을 치료한 지정의료기관에서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1) 현재 재해 어선원만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중상해를 입은 재해 어선원의 보험금 청구 접근성을 제한하여 보험금 지급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재해 어선원을 치료하고 있거나 치료한 지정의료기관에서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 어선원에게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併記)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개정(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 보험연도”를 “보험연도”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입·지출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료중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하여야”를 “보험료 중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중”을 “분쟁이 있어 그 분쟁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보험료중”을 “보험료 중”으로, “미경과”를 “경과하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험계약중”을 “보험계약 중”으로, “환급하여야”를 “환급해야”로 한다.

제5조 중 “사항에 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을 “소견으로 요양급여의 지급을”로, “아니하도록”을 “않도

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서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근무시간에 관한”을 “근무시간을 작성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을 “유해요인을 작성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직무에 관한”을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중앙회는 그 사실을 해당 어선원등이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신청서”를 “요양급여 신청서”로, “신청인”을 “신청인(지정의료기관등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지정의료기관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등을 진료한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어선원등의 재해가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 판단되면 그 어선원등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어선원등이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지급 여부를”을 “지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입”을 “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의 인정 여부”를 각각 “재해인지”로, 같은 항 중 “질병”을

“재해”로 한다.

제5조의4의 제목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을 “(치료의 계속에 대한 자문)”으로 한다.

제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내역서”를 “명세서”로 한다.

제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를 “심사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필요성에 관한”을 “필요성이 포함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을 각각 “등에게 보험급여에 상응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제공에 관하여는”을 “제공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존가액”을 “잔존가액(殘存價額)”으로 한다.

제8조의3제3호 중 “오류,”를 “오류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2호 중 “등록필증”을 “등록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하~~여~~”를 “통해”로 한다.

제8조의5제2항 중 “통하~~여~~”를 “통해”로 한다.

제8조의6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로,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를 “해양경찰청에게”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
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 ----- ----- ----- ----- ----- <u>보험연도</u> ----- ----- <u>보고해야</u> ----- -----.		
1. 해당 보험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의 <u>수입 및 지출계획</u>		1. ----- ----- <u>수입 · 지출계획</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해당 보험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u>대차대조표</u>		3. ----- -- <u>재무상태표</u>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u>각호</u> 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① ----- ----- ----- ----- <u>각 호</u> ----- -----.		
1. 보험급여 및 환급금(중앙회		1. -----		

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에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가입
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
결정은 없었으나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
는 보험급여 및 환급금

2. (생략)

3. 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
결정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중인 보험급여
및 환급금에 준하는 금액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보험
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내에 징수한 보험료
중 그 보험연도말 현재 미경
과 기간의 부분에 대하여 징
수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험연도말 현재 계속되고
있는 보험계약중 보험계약기
간이 만료된 때에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계약에 있어
서는 그 환급금

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금

----- 보험료 중 보험가입
자에게 환급해야 -----

2. (현행과 같음)

3. -----
---- 분쟁이 있어 그 분쟁 중

② -----

-----.

1. ----- 보험료
중 ----- 경과하
지 않은 -----

2. -----
-- 보험계약 중 -----
----- 환급해야 --

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해당 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은 요양신청서.
다만,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생략)

3.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시

----- 사항은 -----

-----.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

소견으로 요양급여의 지급을 -

----- 않도록 -----.

1. 해당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서

2. (현행과 같음)

3. -----
----- 근무시

간에 관한 서류

4. 어선원등이 승선했던 어선의
작업환경 또는 유해요인과 위
험요인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당 재해 또는 해당
어선원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으로서 직무상 재해인지를 결
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중앙회는 요양급여의 신청이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가
입자의 확인 없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보험가
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양급여
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
에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간을 작성한 -----

4. -----
----- 유해요인을 작
성한 -----

5. -----
----- 직무 -----

② 법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
여의 신청을 받으면 중앙회는
그 사실을 해당 어선원등이 소
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
다. -----

-----.

③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등을 진료한 제22조제2
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어선원등의 재해가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로 판단되면 그 어

③ 중앙회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내용과 다르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중앙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 5. (생략)
6.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선원등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어선원등이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 요양급여 신청서----- 신청인(지정의료기관등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지정의료기관등을 포함한다)---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 지급을 -----.

② ----- 포함 -----.

1. ~ 5. (현행과 같음)
6. ----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 ----- --
③ 중앙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직무상 <u>재해의 인정 여부를</u>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직무상 <u>질병</u> 여부의 판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③ ----- ---- <u>재해인지</u> ----- ----- ----- -- <u>재해</u> ----- -----.
제5조의4(<u>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u>) ①·② (생략)	제5조의4(<u>치료의 계속에 대한 자문</u>) ①·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5(<u>진료비의 청구</u>)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첨부하여야</u> 한다.	제5조의5(<u>진료비의 청구</u>) ----- ----- ----- ----- <u>첨부해야</u> -----.
1. 개인별 진료비 <u>내역서</u>	1. ----- <u>명세서</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의6(<u>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 결정</u>) ① 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u> 한다.	제5조의6(<u>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 결정</u>) ① ----- ----- -- <u>심사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해야</u>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	② -----

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 질병 상태 및 재요양의 필
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
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
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
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
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
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
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
서

② 재요양의 결정 등에 관하여

----- 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

----- 첨부해야 -----.

1. -----
----- 필
요성이 포함된 -----

2. -----
----- 등에게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

3. -----
----- 등에게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

② ----- 등은 -----

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① 중앙회 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 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등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제6조의4(「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채납 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

_____.

_____.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① ----- 지정의료
기관등-----

----- 요구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4(「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 제

공은 -----

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
 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
 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
 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
 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
 서장”은 “중앙회”로, “국세·가
 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
 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 3. (생략)

제8조의3(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
 64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를 말한다.

1. · 2. (생략)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정보처리장치
 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

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

잔존가액(殘存價額)-----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의3(납부기한의 연장) ----

 -----.

1. · 2. (현행과 같음)

3. ----- 오류 또는 -

경우	--
4.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 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어선의 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u>아니</u> <u>한</u> 경우	4. ----- ----- ----- ----- ----- ----- <u>않은</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 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 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 장·군수·구청장은 등록하거 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 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 차) 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u>등록필증</u>	2. ----- <u>등록확인증</u>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 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u>통하여</u> 확인할 수 있는	② ----- ----- ----- ----- <u>통해</u> -----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5(통보 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첨부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6(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중앙회는 제8조의4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어선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거나 제8조의5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서식) ① (생략)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해서는 안

-----.

제8조의5(통보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해 -----

-----.

제8조의6(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 해양경찰청장에게 -----

-----.

제10조(서식)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안 -----

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 및 서류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신설)

---. -----

-- 그렇지 않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